

「제47회 강진청자축제」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

제47회 강진청자축제 행사 기간 중 푸드트럭 영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
공고합니다.

2019년 8월 8일

강진군향토축제추진위원장



1. 공고내용

- 공 고 건 : 제47회 강진청자축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
- 임대기간 : 2019. 10. 3.(목) ~ 10. 9.(수) / 7일간
- 장 소 :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 지정 장소
- 허가대수 : 5대
- 허가면적 : 대당 10m²
- 참가비용 : 대당 20만 원
 - ※ 축제기간 다수 신청자 감안 최소비용 제시
- 영업업종 :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 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
또는 제과점 영업

2. 접수개요

- 접수기간 : 2019. 8. 8.(목) ~ 8. 21.(수) 18:00까지
- 접 수 처 : 강진군청 문화예술과(강진읍 탐진로 111, 4층)

3. 신청자격

-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한 사람

4.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

- 기 간 : 2019. 8. 8.(목) ~ 8. 21.(수) 18:00까지

- 제 출 처 : 강진군청 문화예술과

(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)

※ 대리인 접수시에는 위임장(붙임 3) 제출

○ 제출서류

- 차량 사진 1부.
- 푸드트럭 영업 신청서 1부.(붙임 1)
- 사업계획서 1부.(붙임 2)
-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1부(본인)
- 주민등록증 사본 1부.
- 운전면허증 사본 1부.
- 푸드트럭 영업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류
 - 푸드트럭 운영자 명의의 자동차등록증(이동용 음식판매 용도),
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, 위생교육증, 보건증
- 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. (붙임 4)
-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
 -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.
 -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, 건강보험

자격득실확인서(직장보험 미가입자), 기타 실업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

5. 대상자 선정절차 : 제출서류 심사 및 신청인의 열정과 의지, 경험 등의 적정여부, 판매음식 메뉴 등 종합적 고려 적격 여부 확인

6. 심사 및 발표

○ 심사방법 : 신청서 서면 심사

※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강진지역 업체 우선 선정

○ 심사발표 : 2019. 8. 27.(화)

○ 발표장소 : 청자축제 홈페이지 - 자료실

(http://www.gangjin.go.kr/culture/festival/celadon_porcelain)

7. 임대료 납부

○ 납부기한 : 2019. 8. 28.(수) ~ 8. 30.(금) 18:00까지

○ 송금계좌 : 농협중앙회 301-0245-4273-41 (예금주 : 강진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)

※ 납부기한 내 임대료 미납 시 부스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8. 푸드트럭 추첨

○ 일 시 : 2019. 9. 4.(수) 15:00

○ 장 소 : 강진군청 대회의실 (본관 2층)

○ 대 상

-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완비 등 푸드트럭 임대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고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여 푸드트럭 사용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(기관)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

○ 방 법 : 접수순 번호표 배부 후 추첨을 통하여 푸드트럭 배정

6. 기타 유의사항

-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(이하 '사용자'라 한다)은 푸드트럭 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.
-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,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본 응모에 대하여 별도의 현장 설명회가 없으니 응모자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하시고,(사업이 타당성 등) 기타 응모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숙지 및 담당자에게 응모기간 내에 확인하셔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.
-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, 기 납부한 참가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반환됩니다.
 - 가. 제3자에게 양도·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
 - 나.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
- 사용자는 사용·수익허가 받은 목적을 승인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,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.
-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,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, 인테리어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, 권리금,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.
-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청소, 전기, 수도 등의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,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전라남도 강진군의 해석에 의합니다.

7. 허가자 준수사항

- 영업신고 완료 후 계약기간 내 영업개시 가능합니다.
- 푸드트럭을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, 운영 시 민원발생 예방과 발생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.
- 영업개시 전, 상호 협의하에 판매 업종 및 품목을 정합니다.
- 영업에 필요한 전기, 상수, 가스, 오폐수 처리시설은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푸드트럭에 대한 합법적인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 후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
- 푸드트럭은 허가된 구역 내에서만 영업행위가 가능합니다.

8. 기타 문의사항

- 강진균향토축제추진위원회 / 전화번호 061-430-3352~4